



수 원 고 등 법 원

제 3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2024누1240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원고, 항소인 A 주식회사
피고, 피항소인 ○○시 ○○출장소장
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4. 4. 18. 선고 2023구합69238 판결
변 론 종 결 2025. 4. 16.
판 결 선 고 2025. 5. 28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22. 12. 7. 원고에게 한 취득세 9,370,180원(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) 및 지방교육세 764,670원(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)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, 이 법원에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, 이 법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.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

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2. 결 론

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임○○

판사 나 ○

판사 송○○